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연령 상향
(65세 → 70세) 〉

■ 백선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03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연령 상향(65세 → 70세)	2

I. 제안경위

2025년 5월 1일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고,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보험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현행대로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Ⅲ. 검토의견

1.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연령 상향(65세 → 70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77조의2제2항제1호).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생략)	제10조(적용 제외) ① (현행과 같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70세 이후에 고용(70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70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인 자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략)	<u>아니한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1. <u>65세</u>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u>65세</u>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u>65세</u>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② ----- ----- ----- -----.
2. 3. (생략)	1. <u>70세</u> ----- ----- -----7 <u>0세</u> ----- -----70세----- ----- ----- -----
③ ~ ⑥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제한 연령을 설정한 이유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가 고령근로자의 소득보장수단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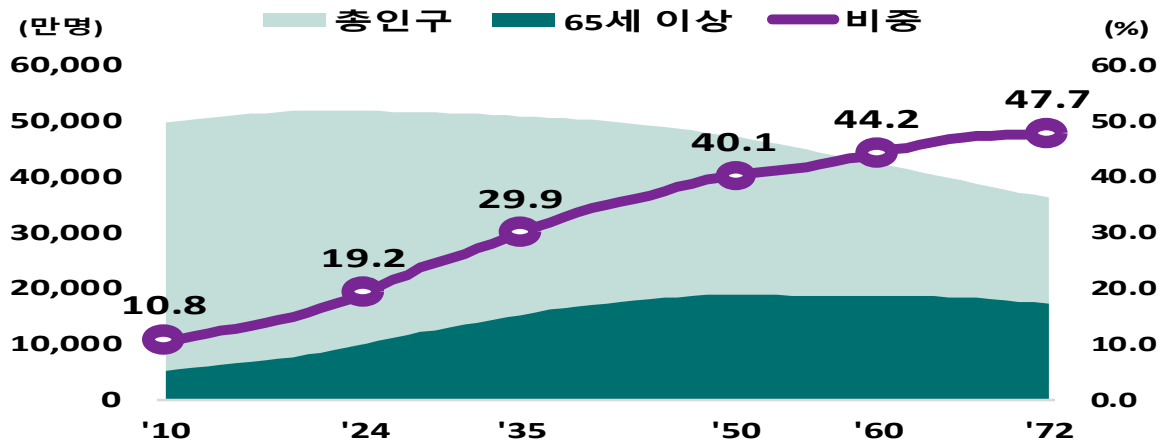
한편, 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 도입 당시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를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1996년 이후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와 65세 이상인 자만 적용 제외하였고, 2002년 이후 고령화 추세, 국민연금 수급 연령 및 경제활동 연령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인 자만을 적용 제외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음.

[표]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연혁

'95.7.1	'96.12.30	'02.12.30	'06.1.1	'13.6.4	'19.1.15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	⇒ 60세 이후 새로이 고용된 자와 65세 이상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65세 이상인 자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은 적용)	⇒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적용)	⇒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적용)

그런데 2024년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비중이 19.2%에 달하는 한편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할 전망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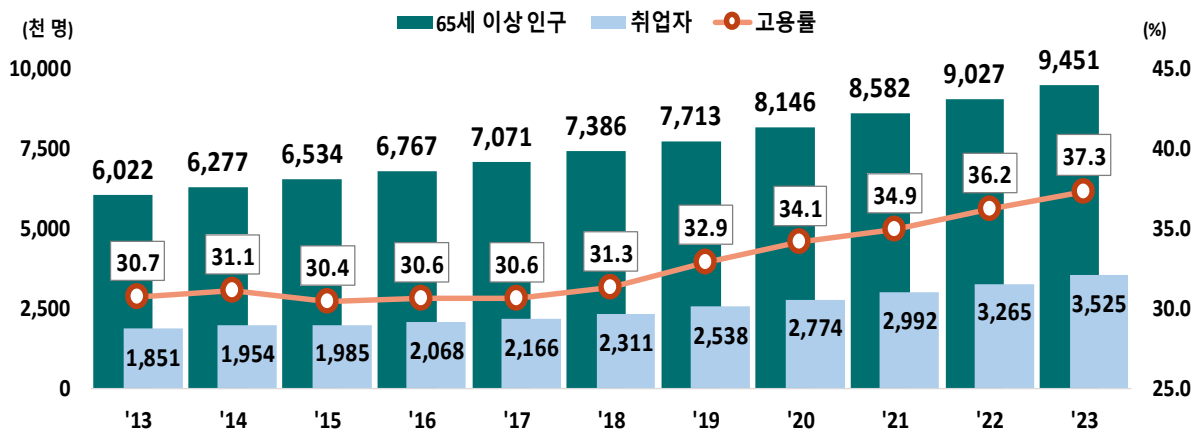
[그림]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비중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65세 이상의 고용률도 2017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의 고령자도 실업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

[그림] 고령(65세 이상)의 고용 현황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김태환. (2023). 고령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에 대한 고찰. 사회법연구, 49, 131-159.

이에 개정안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부터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고령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고용보험제도와 공적연금제도의 정합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살펴보면 경제활동 가능 연령에서는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근로 중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며,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離職)한 경우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는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 기초연금)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까지 65세로 순차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연령을 현행처럼 65세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 전반의 사회보장제도 체계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실업급여 수급 제한 연령 상향 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5~19세를 제외한 다른 연령에 비해 60세 이상의 근로형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직(離職)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업급여 지출액이 증가하여 기금 재정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봄.

[표] 연령별 근로형태

(단위: 천명)

연령	2022.08			2023.08			2024.08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계	21,724	13,568	8,156	21,954	13,832	8,122	22,143	13,685	8,459
15 - 19세	184	25	159	173	19	154	159	16	143
20 - 29세	3,613	2,199	1,414	3,528	2,105	1,423	3,389	1,929	1,461
30 - 39세	4,488	3,505	983	4,571	3,582	989	4,729	3,657	1,072
40 - 49세	4,978	3,655	1,323	4,976	3,665	1,311	4,908	3,597	1,310
50 - 59세	4,883	3,158	1,725	4,894	3,267	1,627	4,925	3,264	1,661
60세이상	3,580	1,026	2,553	3,812	1,193	2,619	4,033	1,222	2,81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상황, 정년연장 논의 상황,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일반 피보험자와 다른 별도 지급체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8